



2015년 6월 개정 | 2018년 1월 개정 | 2020년 1월 개정 | 2025년 3월 업데이트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애틀 대교구는 신자들과 성직자 및 평신도 사목자들 사이의 성스러운 신뢰의 유대를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본질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 비행, 성희롱은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학대이며 해로운 행위입니다.

사목적 돌봄, 연민, 치유, 그리고 화해는 가톨릭 공동체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성스러운 신뢰의 유대가 훼손된 경우, 시애틀 대교구는 이 문제를 섬세하고, 개방적이며, 솔직하게 다룰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나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비행이라는 비극적인 사안에 대응할 때 언제나 대교구의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archseattle.org/for-parishes/safe-environment/>

대교구 상담 전화: 1-800-446-7762



대교구
1에비뉴 9th710

시애틀
98104WA시애틀,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시애틀 대교구 성직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침



가톨릭 주교 학대 보고 서비스(CBAR)

가톨릭 주교 학대 신고 서비스(Catholic Bishop Abuse Reporting Service, CBAR)는 주교에 의한 성적 학대 및 관련 비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위해 해당 교회 당국에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신고에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같은 범죄가 포함된 경우 행정 당국에도 신고됩니다.

ReportBishopAbuse.org

(800) 276-1562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학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학대는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18세 미만) 또는 취약한 성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의 네 가지 기본 유형은 무엇입니까?

- 일.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발생하며 사고가 아닙니다.
- 이. **방치**는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건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학대 또는 과실입니다.
- 삼.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에게 언어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를 가할 때 발생합니다.
- 사. **성적 학대**는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과 성인 또는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더 강력한 사람 간의 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타 착취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언어적 자극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찍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포르노 또는 성인의 성적 행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취약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 18세 이상으로 나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 발달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
- 법적 보호자가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
- 를 통해 재택 간호를 받는 개인
- 면허가 있는 건강, 호스피스 또는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고용된 보조원으로부터
- 목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는 특정 개인
- 교정 시설에 수감된 개인

의무 신고자란 무엇입니까?

워싱턴 주 법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심되는 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사, 의사, 상담사, 경찰,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등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워싱턴 주 학대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RCW 26.44.030 참조).

시애틀 대교구의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교회 인력(Church Personnel)은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 신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사제들 (고해성사 중인 경우 제외)
- 부제들
- 직원들:
 - 대교구의 모든 직원 (직무상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과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 자원봉사자들:
 - 자원봉사 활동 중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과 접촉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DSHS(워싱턴 주 사회복지복지부) 또는 지역 당국에 선의로 신고한 사람은 보복성 조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필요한 작업: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이 학대 또는 방치로 고통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교회 직원은 해당 법 집행 기관 또는 워싱턴 주 사회 보건 서비스국(DSHS)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1-866-END-HARM (1-866-363-4276)을 첫 번째 기회에 신고하되,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름
- 연령 (대체로 OK)
- 주소
- 전화번호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 학대의 성격
- 학대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알고 있는 경우)

(귀하의 신고가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 전화하는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참고: 성직자, 대교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적 학대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대 혐의에 대해 알게 된 지 48시간 이내에 또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대교구 학대 상담 전화에 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애틀 대교구 헬프라인:

1-800-446-7762

또는 대주교에게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710 9th Avenue, 시애틀, WA 98104